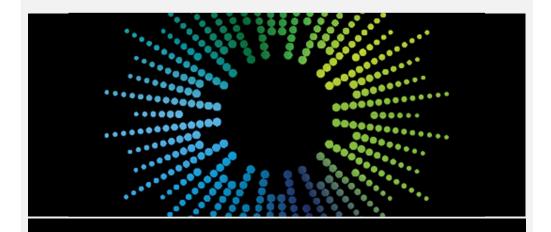
Deloitte.

Korea | Tax | 7 October 2022



Creating the future, togetherKorean Tax Newsletter

2022 년 9 월

• 예규·판례

- 가. 1 차 발전과 2 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 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2 차 발전단계만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 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 2021지 2926, 2022.09.05)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1 년부터 OOO 에 소재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2016 년 3 월부터 2018 년 1 월까지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46 조 제 1 항 제 6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 원(2016 년도분 OOO 원, 2017 년도분 OOO 원)을 신고. 납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2021.4.30. 위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이하 "1 차 발전단계"라 한다)과,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500 ℃ 이상의 배기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2 차로 생산된 전력(이하 "쟁점전력"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 원(2016 년도분 OOO 원, 2017 년도분 OOO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8. 이를 거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LNG 복합화력발전방식은 1 차 발전과 2 차발전의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2 차
 발전단계에서는 1 차 발전단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발전이 진행되는 점
 - ✓ 배기열은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한 결과 배출되는 것이고 천연가스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쟁점전력은 천연가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산될 수 없는바, 2 차 발전과정만 분리하여 쟁점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 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고,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가스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1 차 전력이든,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을 사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쟁점전력이든 모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상 이는 모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 개정된「지방세법」제 143 조는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천연가스를 연소한 결과물인 배기가스(배기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은 아닌 점
- ✓ 제 2 차 발전설비가 1 차 발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였으므로 에너지절약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 차 발전과 2 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 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2 차
 발전단계만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나.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344, 2022,08,29)

■ 질의

-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경우의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 (제 1 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제 2 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제 1 안이 타당함

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09.20)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4 항 제 2 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